

선거관리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(이하 본 규정)은 본 학회 정관 제3장 12조, 규칙 제5장 10조에 의거 평의원, 회장 및 감사, 부회장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) 평의원, 회장, 감사의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장1명, 위원 약 간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제3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) 본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과 회장 및 감사의 선거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 (동수 득표자의 순위) 평의원, 회장단 및 감사의 선거에서 동수 득표 시 연장 순위로 결정한다.

제5조 (직선평의원후보자 선정기준) 이사회는 평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선평의원 정족수의 2배수 이내의 평의원후보자를 선정한다. 직선평의원 후보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.

1. 정회원 활동 : 3년이상 (단, 특별회원사 대표, 협찬사 및 전사업체는 예외)
2. 나이 만38세 이상 65세 미만(단 당해연도 정년대상자 포함)

제6조 (직선평의원의 선출)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.

1.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의원후보명단(160명 이내)과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 투표 명단을 작성한다.
2. 회원은 투표명단에 명시된 후보 중 직선평의원 정수(80명) 이내의 후보에 기표한다. 단, 투표명단의 후보자 중 80명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.
3. 투표 및 개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며 득표순위에 따라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.
4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전자투표로 시행한다.

제7조 (당연직 및 간선평의원 선출) 다음에 의하여 당연직 및 간선 평의원을 선출한다.

1. 당연직평의원은 명예회장, 원로위원, 자문위원, 최고정책위원중 재임 중인 지회장은 투표 없이 평의원으로 추대한다.

2. 간선 평의원은 ① 지회 쿼터제 : 직선당선자가 지회쿼터 인원수에 부족할 경우 지회장을 제외한 인원수 만큼 추천한다(쿼터인원수 : 지회 회원수 30인당 1명).

② 신입 회장단에서 추천 :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요청되는 인사를 추천한다.

단, 기 가입 회원(6개월 전)중에서 추천한다.

③ ①항 ②항에서 추천된 평의원은 직선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입회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회장 및 감사의 선출) 다음의 절차와 순위에 의해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.

1. 회장후보는 본 학회에서 2기 이상 임원을 역임한 직선평의원 및 당연직평의원으로서 선거권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아 회장입후보신청서(양식1, 2)를 별도의 선거관리지침에 따라 사무국으로 기한 내에 등록한다.

2. 선거권자는 직선평의원 및 당연직평의원으로서 한다.

3.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 소견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거권자 에게 E-mail 로 발송하여 사전 검토하게 한 후 소견발표 없이 출석투표(무기명 비밀투표)를 실시한다.

단, 국가 비상사태(재난, 질병 등)의 경우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고,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4. 회장후보 소견서에는 상대후보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며, 기타 유인물 및 E-mail 등을 발송할 수 없다.

5. 회장 및 감사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단, 회장후보가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.

6. 선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는 선거 일주일 전부터 선거전날까지 학회 사무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, 출석으로 인정한다.

7.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투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 투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 단,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9조 (부회장의 선출)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3년 5월 14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4년 7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5년 6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단, 2016년 1월 1일에 선임한 최고정책위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당연직 평의원 자격을 유지한다.
7. 이 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8. 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9. 이 규정은 2021년 9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10. 이 규정은 2021년 12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11.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선거관리 지침

1. 회장입후보신청서 제출 및 준수사항

- 1) 회장입후보신청서(양식 1)를 작성하고 선거관리규정 및 지침을 따를 것을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.
 - 양식 1(인적사항, 학력, 경력, 대리인 및 참관인 지정, 학회 운영철학 및 기본방안, 대표업적 3가지, 봉사활동, 수상 및 영예)
- 2) 회장입후보추천서 목록(양식 2)를 작성하고 회장입후보추천서(추천인 날인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양식 2 (회장입후보추천서 목록, 회장입후보추천서)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15년 7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.